

대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다25866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0. 12. 10 선고 2020다258664 판결

전주지방법원 2020. 7. 23 선고 2019나2127 판결

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. 1. 8 선고 2018가소905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조합

피고, 상고인대한민국

판결 선고 2020. 12. 10.

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9나2127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이므로 같은 법 제3조에서 규정한 사유가 있는

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.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민유숙

대법관김재형

대법관이동원

주심대법관노태악